

2003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778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1. 28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11. 30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12. 26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사유

-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도모

3. 주요골자

-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 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
- 기금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
- 기금지급은 년2회(상·하반기 각1회)
- 기금지급 인원 및 금액은 27명 10,000,000원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계획안은 1991년도부터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동 조례의 목적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여 저소득 자활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왔음.
- 2003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02년 이월금 118,496천원과 기금적립금 이자 13,200천원, 합계 131,696천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장학생 27명을 선발하여 2003년도 상·하반기 각1회씩 10,000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조례에 적절하게 기금을 운영할 것이나

- 금후 기금예치 상황과 자금관리방법,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과 선정방법, 금리 등락에 따른 장기발전대책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금리가 낮는데 장학금 지급에 관계가 없는가?
- 답 : 당초 경남도에서 1억의 예산을 예치하여 그 이자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에 별문제가 없음.
- 문 : 지원기준 내용중 지급대상에서 영세농어민 자녀라고 표기하였는데 너무 애매하지 않은지?
- 답 : 영세농어민은 농지 1,500평 이하로 생계가 곤란한자를 말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용어 자체가 포괄적이므로 이후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2. 12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